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유가족 범위 확대 〉

■ 부승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688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 수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유가족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호)	2
※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부승찬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5. 7. 23.
3. 회 부 일 : 2025. 7.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로자의 유가족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로 한정하고 있어 서훈 대상자 결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6·25전쟁 당시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자손을 남기지 않고 부모님이 사망한 공로자의 경우 형제자매는 유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공훈장을 수여할 유가족이 없는 실정임.

이에 공로자의 손자녀 및 증손자녀, 형제자매까지 유가족으로 인정하여 이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신설).

Ⅲ. 검토의견

1. 유가족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호)

- 현행법은 유가족의 범위에 배우자, 자녀, 부모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를 추가로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유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로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 -----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설>	라. 손자녀
<신설>	마. 증손자녀
<신설>	바. 형제자매

- 현행법은 6·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

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을 두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문서(전자문서 포함), 구술이나 전화·전신·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실제 무공훈장을 수여받기로 결정된 사람이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공로자 또는 유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 이에 따라 공로자의 유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가족 등록을 신청해야 하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없는 경우 및 자녀가 있었어도 사망한 경우 등에는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임에도 신청주체가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정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유가족의 범위를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6·25전쟁 참전자의 직계 유족(배우자, 자녀 등)이 이미 고령이거나 사망한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의 공로에 대해 국가의 지속적인 예우와 책임의지를 보임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점과 후손에게도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의미를 계승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됨.

또한 유공자의 유가족 범위를 규정한 유사입법례에서 개정안과 같이 유가족 범위에 형제자매 중 ‘제매’를 포함한 법률(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과 ‘손자녀’를 포함한 법률(독립유공자)이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유사입법 유가족 범위]

구분	유가족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배우자, 자녀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봄)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 다만, 현행법 제7조¹⁾에 따르면 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은 경우, 조사단장²⁾은 이들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³⁾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등록을 신청

- 1)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인정 여부의 통보 등) ① 단장은 제5조에 따른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신청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보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 대상자는 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통보받은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 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2) 국방부장관 소속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장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⁴⁾에 따른 유가족의 범위와 개정안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유가족의 범위(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 간에 상이한 문제가 발생하여 혼선⁵⁾을 일으킬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유가족 범위 비교]

구분	유가족 범위	
	현행	개정안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 개정안에 대해서 국방부는 유가족 범위 확대(신설)에 동의하며, 무공훈장을 찾아드린 유가족은 자녀 다음으로 조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유가족 인정 범위에 ‘형제자매의 자녀’를 추

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5) 예를 들어 공로자의 손자녀의 경우, 개정안에 따르면 무공훈장 수여대상인 유가족이 되므로 현행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지원하여야 하나, 유가족 신청이 있어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가족에 해당되지 않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어려움.

가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08

※ 참고자료

*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 수여 (전달) 현황 ('19. 7월 ~ '25. 6월)

(단위: 명)

구 분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31,259	736	5,903	7,149	5,866	6,077	4,233	1,295
본 인		669	72	171	177	147	78	19	5
배우자		893	54	216	268	130	132	77	16
자 녀		18,112	363	4,109	4,254	3,368	3,257	2,052	709
부 모		0	0	0	0	0	0	0	0
기 타	형제자매	1,614	57	236	385	368	246	231	91
	조 카	9,016	170	1031	1869	1624	2140	1741	441
	손 자	900	20	138	185	205	216	106	30
	증손자	55	0	2	11	24	8	7	3